

저임금근로자의 실태*

성재민**

I. 머리말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래 양극화, 불평등 심화가 지속되면서 저임금근로에 대한 관심이 커져 왔다. 저임금근로는 절대적 저임금과 상대적 저임금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정의될 수 있다. 절대적 저임금 접근법에서는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소득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저임금근로자로 정의하며, 상대적 저임금 접근법에서는 중위임금의 2/3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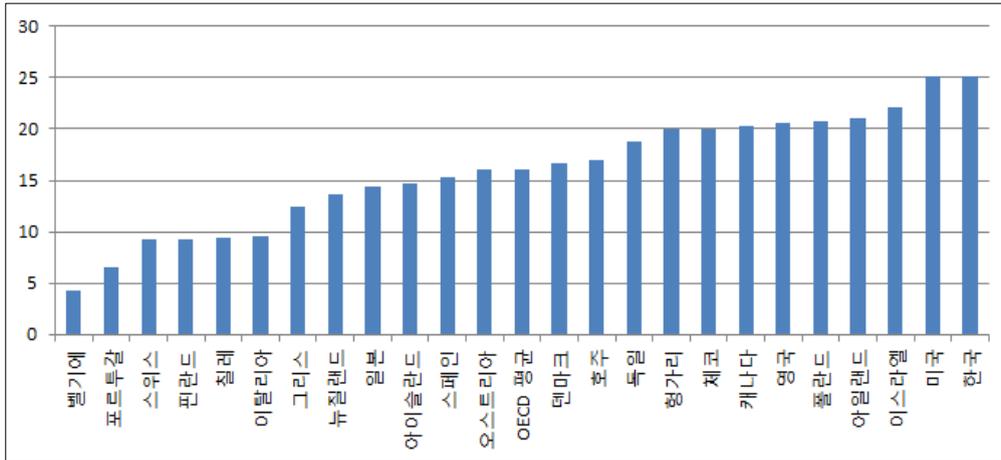
OECD, EU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통상 상대적 저임금 접근법을 통해 저임금근로자를 정의하고 분석한다. 절대적 저임금 접근법으로는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려워 국가 간 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의 영향을 받아 국내의 저임금 관련 연구들도 대부분 OECD 등 국제기구의 관행을 따라 중위임금의 2/3 미만을 저임금근로자로 정의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OECD는 [그림 1]과 같이 저임금 비중을 비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보고한 나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임금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 [그림 2]는 OECD 회원국들의 저임금근로 비중을 종속변수로, 임금불평등도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이다. 이를 보면 중하위 임금불평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하위 1분위 임금 간 격차를 설명변수로 하는 단순회귀분석의 모형적합도 (R^2) 가 무려 0.90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임금근로자 비중 감소

* 이 글은 기획재정부 수탁과제로 2012년에 집필된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 노동시장 이중구조 분야』의 ‘제4장 저임금근로’편을 재정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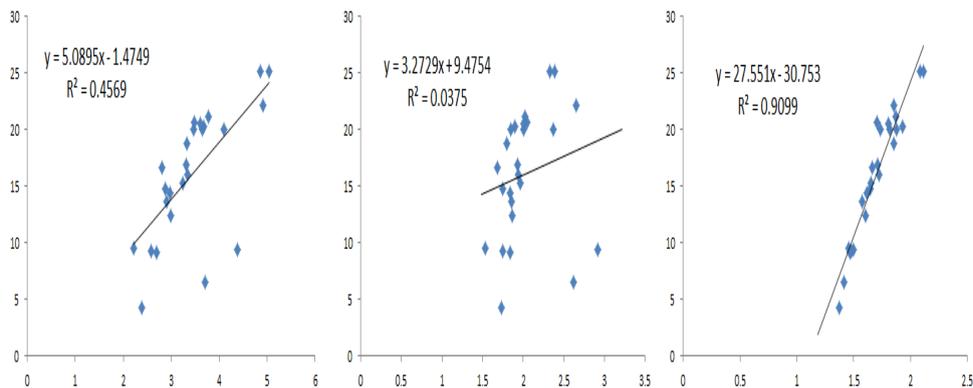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전문위원(jmseong@kli.re.kr).

[그림 1] OECD 국가들의 저임금근로자 비중(2011)



주: OECD 국가들 중 저임금 비중을 보고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 2011년 기준.
 자료: Online OECD Employment database, <http://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earndisp>

[그림 2] 저임금 비중과 임금불평등도의 관계(좌측 9대1, 중간 9대5, 우측 5대1)



주: OECD 국가들 중 저임금 비중을 보고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정. 2011년 기준.
 자료: Online OECD Employment database, <http://www.oecd.org/employment/emp/onlineoecdemploymentdatabase.htm#earndisp>

를 위해서는 중하위 임금불평등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하에서는 최근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저임금근로자의 실태(제II장)와 저임금근로의 반복성(제III장), 저임금근로와 가구빈곤의 관계(제IV장)를 살펴보겠다.

1) 이하에서 저임금근로자는 모두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후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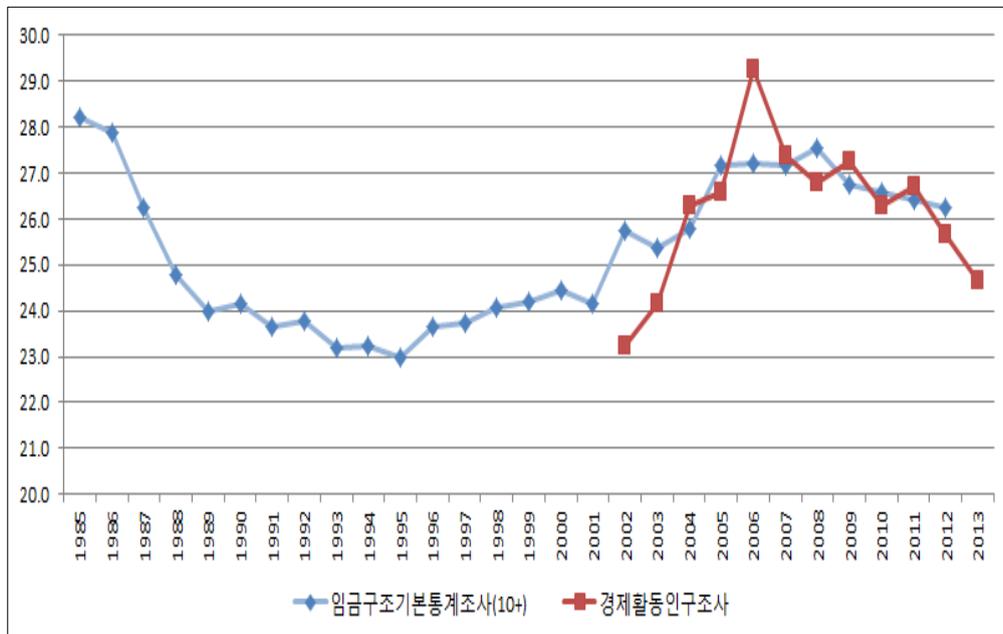
II. 저임금근로의 실태

우리나라에서 장기시계열로 임금을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인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10인 이상 사업체 자료로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계산하면 [그림 3]과 같이 1995년까지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감소하다가 그 후 증가하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임금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근로형태 부가조사를 분석해 보면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02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약 1/4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저임금근로자 비중의 추이는 2006년을 정점으로 그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적 속성별로 저임금근로자 분포를 정리한 <표 1>에 의하면 저임금근로자는 주로 여성(64.7%)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대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21.7%)으로 나타난다. 학력별로는 고졸(49.8%)의 비중이 높고,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유배우(55.7%), 직종별로는 단

[그림 3] 상대적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주 : 수집된 자료는 월급여이므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후 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 각 연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인적 특성 및 일자리 특성별 저임금근로자 분포 및 비중

(단위: %, 월)

		특성별 분포	특성 내 비중
성별	남성	35.3	15.3
	여성	64.7	37.1
연령별	15~24세	16.2	50.9
	25~29세	7.2	15.4
	30대	11.7	10.9
	40대	20.2	18.8
	50대	21.7	28.1
	60~64세	8.5	51.7
	65세 이상	14.5	77.7
학력별	초졸 이하	18.0	68.3
	중졸	14.1	47.8
	고졸	49.8	32.1
	전문대졸	9.2	14.6
	대졸	8.0	7.1
	대학원 이상	1.0	5.2
혼인상태별	미혼	28.5	25.3
	기혼 유배우	55.7	21.3
	사별	9.6	67.6
	이혼	6.2	36.6
직종별	관리자	0.0	0.5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8.1	8.7
	사무 종사자	7.7	8.7
	서비스 종사자	20.1	54.2
	판매 종사자	12.6	36.4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2	18.4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5.7	16.1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7.1	15.3
	단순노무 종사자	38.5	60.6
주당근로시간	18시간 미만	9.0	60.8
	18~35시간	18.2	60.7
	36~39시간	3.6	59.5
	40~44시간	24.4	10.1
	45시간 이상	44.8	39.3
평균근속기간 (월)	비저임금	80.6개월	
	저임금	24.7개월	

주: 특성별 분포는 저임금근로자 중 남성이 35.3%, 여성이 64.7%를 차지한다는 의미. 특성 내 비중은 남성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15.3%라는 의미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저임금근로자를 정의하였음.
 자료: 통계청(2013. 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순노무 종사자(38.5%)의 비중이 높다. 주당근로시간은 45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44.8%). 평균근속기간은 저임금근로자는 24.7개월인 데 반해 비저임금근로자는 80.6개월로 3배 이상 길게 나타났다.

특성별 분포는 개별 특성의 인구 내 비중이 크면 그 집단 안에서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낮더라도 저임금근로자가 많은 것처럼 나타날 것이다. 이를 고려하기 위해 특성 내 비중을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저임금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직(60.6%), 서비스 종사자(54.2%)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시간별로는 40~44시간 일하는 근로자 집단에서 10.1%로 가장 낮고, 40시간 미만 근로자 집단에서는 거의 60% 수준에 달하며, 45시간 이상은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거의 40%에 육박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과 고령층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데, EU 6개국을 연구한 Fernandez et al.(2004)에 따르면 25세 미만 청년층의 저임금 비율이 높은 것은 비교대상국가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고령층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높지 않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도 25세 미만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긴 하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 특히 고연령층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이 다른 나라들과 다른 특징임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저임금 및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특성 내 비중을 보아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17.9%), 도매 및 소매업(15.3%), 제조업(11.6%)에 저임금근로자가 많이 분포해 있었으나, 산업 내 비중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65.2%), 농림어업(60.2%), 부동산 및 임대업(42.5%), 사업서비스업(40.0%) 등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다. 이 외에도 임시·일용직에서, 비정규직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2〉 연령별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중 - 국제비교

(단위 : %)

	25세 미만	25~54세	55세 이상
한국	50.9	16.4	39.2
스페인	65.1	18.2	8.8
이탈리아	27.6	6.7	6.8
아일랜드	50.4	10.6	8.7
벨기에	30.4	7.1	6.4
덴마크	39.8	3.6	3.4
영국	40.0	16.2	23.8

주 : 55세 이상 통계는 55~64세를 의미.

자료 : 한국은 통계청(2013. 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외국은 Fernandez et al.(2004) 표 5.

〈표 3〉 일자리 특성별 저임금근로자 분포 및 비중

(단위 : %)

		특성별 분포	특성 내 비중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40.2	52.0
	5~9인	24.5	34.4
	10~29인	18.5	20.8
	30~99인	11.3	14.0
	100~299인	3.6	9.4
	300인 이상	1.9	3.8
산업	농림어업	1.8	60.2
	광업	0.1	14.9
	제조업	11.6	14.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1	3.3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2	10.7
	건설업	5.3	17.5
	도매 및 소매업	15.3	32.5
	운수업	3.5	20.9
	숙박 및 음식점업	17.9	65.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8	5.8
	금융 및 보험업	1.2	6.5
	부동산업 및 임대업	3.2	42.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	5.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9.7	4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5	20.7
	교육서비스업	4.1	13.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3	28.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3	39.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6	34.2
	가구 내 고용활동 등	2.7	68.5
종사상 지위	상용직	23.7	9.0
	임시직	55.5	51.3
	일용직	20.8	60.8
고용형태	정규직	43.5	15.9
	비정규직	56.5	42.7

주 · 자료 : <표 1> 참조.

Ⅲ. 반복 저임금근로

저임금 고용은 인생의 일시적 단계일수도 있고,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함정일 수도 있다. 저임금 고용이 함정의 성격이 강하다면 반복적으로 저임금 고용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높게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나 존재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저임금 고용의 경험횟수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였다. 저임금 상태를 탈출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윤윤규·성재민(2011)에 따르면 임금근로와 자영업근로를 오가는 사람들의 비중은 매년 약 10% 안팎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저임금근로자의 특성으로 인해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은 자영업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므로, 자영업 경험을 포함해 분석하겠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사람들로 분석대상을 제한하기 위해 분석대상 시점 내내 임금근로자로 조사된 사람 또는 분석대상 시점 내내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일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노동패널조사 6~15차에 계속 임금근로자로 조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임금 경험횟수를 계산해 보면 한 번도 저소득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66.9%(671명)로

〈표 4〉 한국노동패널 6~15차 특성별 저임금(저소득) 경험횟수

	계속 임금근로자 기준		계속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기준	
	빈도	비중(%)	빈도	비중(%)
0회	671	66.9	944	57.3
1회	71	7.1	152	9.2
2회	41	4.1	78	4.7
3회	30	3.0	59	3.6
4회	27	2.7	57	3.5
5회	22	2.2	57	3.5
6회	23	2.3	57	3.5
7회	21	2.1	50	3.0
8회	29	2.9	49	3.0
9회	27	2.7	65	3.9
10회	41	4.1	80	4.9
전체	1,003	100.0	1,648	100.0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표 4 참조). 조사기간 내내 저임금이었던 사람은 4.1%(41명)로 많지 않지만, 전체 조사 기간인 10년 중 절반 이상을 저소득으로 보낸 6회 이상 경험자는 약 14%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1/7 정도는 상당한 기간을 저소득자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기간 내내 임금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분석하더라도 비중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²⁾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저소득을 경험한 사람들의 유량(flow)을 계산해 보면, 일시적 저소득 경험자의 비중이 현저히 높고 빈번하게 저소득을 경험한 자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 시점에서 전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산되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저량(stock) 개념이므로, 특정 시점의 저임금근로자 중 장기간 저임금을 경험한 근로자 비중은 유량으로 계산한 저소득 경험자 비율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저량을 기준으로 살펴보기 위해 15차 조사년도에서 저임금근로자로 조사된 사람들의 저임금 경험횟수를 분석해 보았다. 이 시점 저임금근로자 중 75.3%가 6회 이상 저임금근로자로 나타났다. 저임금+저소득 자영업으로 기준을 넓혀도 70.5%가 6회 이상 저임금, 저소득 경험자로 나타났다.³⁾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장기적, 반복적 저임금근로자를 줄이는 데에 성공해야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저임금근로자 비중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표 5 참조).

〈표 5〉 한국노동패널 15차 조사시점에서 저임금(저소득)이었던 사람 기준 저임금(저소득) 경험횟수

	계속 임금근로자 기준		계속 임금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기준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회	5	3.4	15	4.3
2회	4	2.7	16	4.6
3회	6	4.1	14	4.0
4회	10	6.9	23	6.6
5회	11	7.5	35	10.0
6회	11	7.5	31	8.9
7회	13	8.9	37	10.6
8회	20	13.7	36	10.3
9회	25	17.1	62	17.8
10회	41	28.1	80	22.9
전체	146	100.0	349	100.0

2) 이 경우 저임금근로자는 자영업 저소득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3) 이 경우 저임금근로자는 자영업 저소득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저임금근로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에는 개인의 저숙련 등 저임금으로 빠지기 쉬운 특성과, 개인 특성과 무관하게 한번 저임금근로를 경험하면 그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함정효과 등이 있다. 함정효과의 검증은 학계에서 주로 상태의존(state dependence), 기간종속(duration dependence)의 문제로 접근되어 왔다. 상태의존이란 개인 특성과 무관하게 과거의 저임금 경험이 미래의 저임금 경험의 중요한 규정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효과가 존재한다면 저임금을 경험한 사람들은 앞으로도 저임금을 반복하여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기간종속이란 저임금에 일단 빠질 경우 저임금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것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어려워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기간종속은 윤진호·이시균(200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실증되었으며, 저임금의 상태의존은 석상훈(2008), 이병희(2011)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실증되어 저임금근로의 함정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태의존이 있다는 것은 개인 특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저임금 근로의 함정효과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중간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산업정책 같은 노동수요 측면의 정책이 중요함을 뜻하는 것이다.

IV. 가구 빈곤과 저임금

이 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해 빈곤가구의 소득과 경제활동을 저임금과 연계해 살펴보기로 한다.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균등화한 가구소득을 이용해 중위소득 60% 미만의 가구를 빈곤가구로 정의하고, 세금과 공적이전이 반영된 가처분소득 개념을 이용해 분석할 것이다.

<표 6>에서 빈곤가구 여부별 가구의 소득구성을 보면 근로소득은 비빈곤가구 총소득의 87.0%를 차지해 가장 중요한 소득원천임을 알 수 있다. 빈곤가구의 경우 취업자 유무에 따라 근로소득의 중요성은 크게 달라진다. 취업자가 없는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은 9.0%로 떨어지며 대신 사적이전소득의 비중이 71.3%로 상승해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 된다. 취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비중이 77.8%로, 비빈곤가구보다 낮은 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4) 이 연구는 개인 미관측 특성과 초기 조건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 상태의존을 검증하였다.

5) 통상 국내외의 빈곤관련 문헌에서 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는 근로빈곤(working poor) 가구로 정의된다. 본고에서 취업자 있는 가구란 조사시점 현재 취업자가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표 6〉 빈곤가구 여부별 가구의 소득 구성

(단위 : %)

	전 체	비빈곤 가구	빈곤가구 : 취업자 여부		빈곤가구 : 근로능력 취약 여부	
			취업자 없는 빈곤가구	취업자 있는 빈곤가구	근로능력 비취약가구	근로능력 취약가구
근로소득	77.5	87.0	9.0	77.8	62.5	16.8
금융소득	0.8	0.7	2.0	0.3	1.2	1.3
부동산소득	2.8	2.9	5.0	1.1	0.8	4.7
공적이전소득	4.9	3.9	12.3	4.6	6.8	10.8
사적이전소득	13.1	4.4	71.3	16.0	28.5	66.2
기타소득	0.9	1.0	0.4	0.1	0.1	0.3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년도 조사자료(통합패널 기준).

가구의 소득 구성은 근로활동이 활발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와 그런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감안하기 위해 빈곤 가구의 가구원을 19세 이하이거나 65세 이상,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응답한 경우, 심신미약이라고 응답한 경우, 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현재 정규학교 통학 중인 경우⁶⁾를 근로능력 취약자로 정의하고 이러한 가구원들로만 구성된 가구를 근로능력 취약가구, 이러한 특성을 가지지 않은 가구원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를 근로능력 비취약가구로 구분해 빈곤 가구의 소득 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빈곤가구 중 근로능력 비취약가구는 근로소득이 62.5%를 차지했으며, 근로능력 취약가구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16.8%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빈곤가구 여부별 가구원수 분포

(단위 : %)

	1명	2명	3명	4명	5명+	전 체
비빈곤가구	15.4	17.5	21.3	36.6	9.2	100.0
빈곤가구	38.7	28.0	13.6	14.7	5.0	100.0
전 체	21.1	20.1	19.4	31.3	8.2	100.0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년도 조사자료(통합패널 기준).

6) 학교 통학자를 근로능력 취약으로 분류하는 것은 일반적 접근은 아니지만, 각 조사 시점에서 이들은 경제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데다가 취업을 할 경우 아르바이트 성격이 강한 일자리에 근무한다는 점, 이들 일자리는 시급이 낮은 특성이 있는 데다 소속된 가구의 미래 소득 잠재력 확충 등이 고려된 의사결정에 따라 이들의 학교 재학이 결정되었을 것임을 감안해 이와 같이 분류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 근로능력자로 분류되며, 해당 조사시점 통학자만 해당 시점에서 근로능력 취약자로 분류된다.

빈곤가구 여부별 가구원수 분포를 보면 비빈곤가구는 4명으로 구성된 경우가 가장 많고, 빈곤가구는 1명이나 2명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았다. 빈곤가구 중 노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 이와 같은 가구구성 차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표 8〉 빈곤가구 여부별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수 분포

(단위 : %)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전 체
비빈곤가구	5.6	20.3	51.3	14.8	7.2	0.8	100.0
빈곤가구	45.2	26.9	21.0	4.5	2.3	0.1	100.0
전 체	15.3	22.0	43.9	12.3	6.0	0.6	1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년도 조사자료(통합패널 기준).

〈표 8〉은 빈곤가구 여부별로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수 분포를 살펴본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비빈곤가구 중에는 5.6%에 불과한 반면, 빈곤가구 중에는 45.2%의 가구에 비취약 가구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빈곤가구 중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이 2명인 경우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1.3%로 나타났으며, 빈곤가구는 21.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가구에 노동시장 활동이 활발할 수 있는 가구원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빈곤한 가구에 사는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을 분석해 보았다. 〈표 9〉를 보면 비빈곤가구에 사는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20.3%인 반면, 빈곤가구에 사는 임금근로자 중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57.5%로 나타나 빈곤가구 내 취업자는 저임금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저임금근로자 중 빈곤가구에 속한 비중은 30.1%로 나타나 저임금근로자가 모두 빈곤가구에 속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9〉 저임금 여부별, 가구빈곤 여부별 분포

(단위 : %)

	비저임금	저임금	전 체
비빈곤가구	79.7 (92.5)	20.3 (70.0)	100.0 (86.8)
빈곤가구	42.5 (7.5)	57.5 (30.1)	100.0 (13.2)
전 체	74.8 (100.0)	25.2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년도 조사자료(통합패널 기준).

<표 10>에 의하면 근로능력 취약 가구원을 제외하고 조사일 현재 취업 중인 사람의 숫자는 빈곤가구에 비해 비빈곤가구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이 한 명 있는 가구의 경우 취업자가 없는 가구가 비빈곤가구 중에는 12.5%였으나 빈곤가구 중에는 25.6%나 되었고, 1명이 취업자인 가구가 비빈곤가구 중에는 77.5%인 데 반해 빈곤가구 에서는 68.8%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능력 비취약 근로자가 2명인 경우에는 비빈곤가구는 취업자가 1명인 경우가 45%, 2명 이상인 경우가 52.9%로 나타났는데, 빈곤가구는 1명인 경우 55.1%, 2명 이상인 경우 38.2%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이 있는 가구일지라도 가구 내 취업자 비율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빈곤가구가 낮다는 의미이다. 위의 결과는 조사 시점 취업자 기준이므로, 이번에는 1년간 취업경험이 있었던 사람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면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수 1명 이하에서는 빈곤가구나 비빈곤가구나에 따라 결과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수 2명 이상인 경우 비빈곤가구의 취업경험자수가 좀 더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수가 같은 경우에도 비빈곤

<표 10> 빈곤가구 여부별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수와 취업경험자수 분포

(단위 : %)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수					
			0	1	2	3	4	5
조사시점 취업자수	비빈곤가구	0	52.9	12.5	2.1	0.0	1.4	0.0
		1	37.2	77.5	45.0	13.9	8.7	0.0
		2+	9.9	10.0	52.9	86.1	90.0	100.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빈곤가구	0	73.4	25.6	6.7	2.1	4.0	0.0
		1	21.4	68.8	55.1	24.8	59.1	0.0
		2+	5.2	5.6	38.2	73.1	36.9	100.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년간 근로 소득 있었던 사람수	비빈곤가구	0	0.0	0.0	0.0	0.0	0.0	0.0
		1	79.0	87.0	37.7	10.9	5.7	0.0
		2+	21.0	13.0	62.3	89.1	94.3	100.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빈곤가구	0	0.0	0.0	0.0	0.0	0.0	0.0
		1	80.4	88.7	57.0	23.3	37.5	0.0
		2+	19.6	11.3	43.0	76.7	62.5	100.0
		소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근로능력 비취약 가구원수 3명 이상은 표본수가 얼마 안 되므로 의미 있는 수치라 보기 어려움. 취업경험자수는 지난 1년간 취업경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함.
 자료: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년도 조사자료(통합패널 기준).

〈표 11〉 저임금 여부별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 %)

	가구주	자녀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 부모	전 체
비저임금	65.1 (85.4)	17.7 (70.5)	17.2 (54.6)	0.1 (24.2)	100.0 (75.1)
저임금	33.8 (14.6)	22.3 (29.5)	43.1 (45.4)	0.9 (75.8)	100.0 (24.9)
전 체	57.3 (100.0)	18.8 (100.0)	23.6 (100.0)	0.3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년도 조사자료(통합패널 기준).

가구에 비해 빈곤가구의 취업자수가 적은 것은 이들 가구의 취업자수 상당수가 앞에서 보았듯이 저임금근로자이고, 저임금근로자는 임시·일용직,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아 근무속이 짧은 등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노동시장에서 저숙련 등 취약한 개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실업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표 11>은 저임금 여부별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저임금근로자의 다수가 비빈곤가구에 사는 현상은 저임금근로자의 다수가 가구주와의 관계를 볼 때 가구주의 배우자(43.1%)이고, 자녀인 비중도 22.3%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비저임금근로자는 다수가 가구주(65.1%)였고, 자녀인 경우가 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임금근로자가 가구주인 경우 빈곤가구에 거주하는 비율은 49.0%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저임금근로자가 자녀인 경우 빈곤가구에 27.3%, 저임금근로자가 배우자인 경우 17.1%, 저임금근로자가 가구주 부모인 경우 15.2%가 빈곤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저임금근로자가 가구주인 경우 가구가 빈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임금근로자는 다른 가구

〈표 12〉 저임금자의 가구주와의 관계별 빈곤가구 거주 여부

(단위 : %)

	가구주	자녀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 부모	전 체
비빈곤가구	24.6 (51.0)	23.4 (72.7)	51.0 (82.9)	1.1 (84.8)	100.0 (69.9)
빈곤가구	54.8 (49.0)	20.4 (27.3)	24.4 (17.1)	0.4 (15.2)	100.0 (30.1)
전 체	33.7 (100.0)	22.5 (100.0)	43.0 (100.0)	0.9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15차년도 조사자료(통합패널 기준).

원의 소득활동 덕에 빈곤가구 거주확률을 낮출 수 있지만, 다른 가구원의 실직이나 독립 등으로 인해 저임금근로자 자신이 주된 소득원(=가구주)이 되는 순간 빈곤가구화될 위험이 급증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국제적으로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높은 임금불평등과 관련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은 저임금을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서가 아니라 장기, 반복적으로 저임금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저임금 일자리는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개인서비스업, 소규모 사업장, 단순 노무직과 서비스 종사자 등 일상적인 고용불안정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근무기간이 비저임금 근로자의 약 1/3~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저학력, 여성, 청년, 고령자 등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인적 특성도 저임금근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는 주 40시간(주 5일제), 주 44시간 같은 정규직의 일반적인 근로시간에서는 비중이 매우 낮은 한편, 40시간보다 짧거나 44시간보다 긴 경우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저임금근로의 문제가 특정 개인들의 취약한 특성으로 인해 저임금 기간이 장기화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임과 동시에 경제 내에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둘 중 어느 한쪽으로 환원될 수 없는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저임금근로 축소를 지향하는 정책도 문제의 양면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즉 장기 저임금근로자 및 반복적 저임금근로자를 목표집단으로 한 일자리 상향이동 지원을 위해 숙련 훈련 프로그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내실화하고, 이를 위한 고용서비스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임금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노력과 일자리의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 등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를 위한 노력이 모두 동반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구빈곤과 연계해서 보면 취업자가 있는 빈곤가구는 근로소득이 가장 중요한 소득원이라는 점에서 비빈곤가구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빈곤가구에는 노동시장 활동이 활발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가구원이 비빈곤가구에 비해 적다. 빈곤가구에 사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경우 다수가 저임금 일자리를 얻게 되며, 이로 인해 고용이 불안

정한 특성을 갖게 되고, 이들의 취약한 인적 특성도 실업-저임금을 반복할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OECD(2009: 183)에 따르면 고용은 빈곤탈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용확대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빈곤가구 취업자의 소득보충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연계급여제도의 내실화,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한 근로연계급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OECD의 정책 제안은 가구주가 저임금근로자일 경우 가구 전체가 빈곤할 가능성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KL**

<참고문헌>

- 석상훈(2008), 『저임금근로의 동태적 분석: 상태의존성 검증』, 『산업경제연구』 21(2), pp.691~709.
- 윤윤규·성재민(2011), 『저임금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경로 및 결정요인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윤진호·이시균(2009), 『한국의 저임금 고용의 결정요인과 이동성』, 『경제발전연구』 15(1), pp.185~213.
- 이병희(2010), 『근로빈곤의 노동시장 요인과 빈곤 동학』, 『경제발전연구』 16(1).
- _____(2011), 『저임금 함정 위험과 정책선택』,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 토론회 발표문.
- Fernandez, Melchor, Alberto Meixide, Brian Nolan, Hipolito Simon(2004), “Low Wage Employment in Europe”, PIEP Working Paper.
- OECD(2007), Employment Outlook, OECD.